

2 0 2 1 회 계 연 도 서 울 특 별 시
학 교 안 전 공 제 및 사 고 예 방 기 금 결 산 승 인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41
----------	------

2022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5. 24.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2. 5. 27.
4.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1. 제안이유

- 2021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4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0억 6천 2백만원 대비 4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수입은 총 151억 3천 3백만원으로, 이자수입 5천 2백만원, 공제료수입 66억 1천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제료수입 3천 1백만원, 소방사업 수익금 2억 7천 1백만원, 학교폭력피해자 구상금 등 1억 7백만원, 예치금회수 80억 6천 2백만원이고,
 - 지출은 총 151억 3천 3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52억 2천 만원, 예방사업비 1억 9천 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천 6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3천 3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 1백만원, 차년도 예치금으로 84억 7천 2백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2년 5월 24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84억 7,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80억 6,200만원) 보다 5.1%, 4억 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8,062	409	7,070	6,661	8,471

3. 기금 결산 관련 검토

(1) 기금 조성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84억 7,100만원으로 '20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80억 6,200만원) 보다 5.1%, 4억 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된 것임
- '21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2개 회계연도의 연도 말 기금 조성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공제기금의 수익사업 확대 등 기금 조성액 증대 노력의 결과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등교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감소로 인한 공제사업비 및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 지출이 당초 지출계획액 보다 감소한 결과로 검토됨

〈표 3-2〉 회계연도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현황 (2021~2019)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E = A + 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2021	8,062	409	7,070	6,661	8,471
2020	7,019	1,043	7,264	6,221	8,062
2019	8,657	△1,638	6,608	8,247	7,019

(2)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검토

①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은 144억 3,800만원을 수입계획하고, 151억 3,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수입계획보다 6억 9,4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됨

〈표 3-3〉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 용 계 획 (A)	수	납		증 감 액 (C=B-A)	
				(B)	구 성 비		
합	계	14,438	15,132	100.0	694		
전	입	금	-	-	-	-	
예	치	금 회 수	7,394	8,062	53.3	668	
이	자	수 입	27	52	0.3	24	
기	소	계	7,017	7,018	46.4	1	
	공	제 료 수 입	6,753	6,609	43.7	△143	
	타	소 방 수 익	120	271	1.8	151	
	수	입	학교폭력구상금회수	93	72	0.5	△21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	30	30	0.2	-	
		법 인 세 환 급 금	20	35	0.2	15	

○ 예치금회수는 당초 73억 9,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6억 6,800만원 증가한 80억 6,2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제출한 바,

-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직전회계연도 가결산에 근거한 결산상 잉여금 (73억 9,400만원)을 수입계획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당초 계획보다 6억 6,800만원 증가된 80억 6,2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4〉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예치금회수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입계획액 (A)	전 년 도 이 월 액 (B)	수입 계획 현액 (C = A + B)	실 제 수 납 액
예치금회수	7,394	-	7,394	8,062

○ **이자수입**은 당초 2,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400만원 증가한 5,200만원이 실수납된 것이나, **기타수입**중 공제료수입액은 당초 수입계획액(67억 5,300만원) 보다 △1억 4,300만원 감소된 바,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 금액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21년도 공제료 단가를 산정하고 있어,
- 결산결과 공제가입 결산인원(916,471명)이 계획인원(939,654명) 보다 △23,183명 감소되어 공제료수입 결산액(66억 900만원)이 수입계획(67억 5,300만원) 보다 △1억 4,300만원 감소되어 계획 대비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 공제료수입 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21 계획 (A)		2021 결산 (B)		증 감 (B - A)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939,654	6,753	916,471	6,609	△23,183	△143

○ **그 외 기타수입**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의한 소방안전점검대행사업 이익금, 학교폭력 구상금 회수,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항목 등으로, 당초 수입계획액(2억 6,300만원) 보다 1억 4,400만원 증가한 4억 8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② 지출 결산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21회계연도 지출액은 151억 3,200만원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144억 3,800만원) 보다 6억 9,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된 바,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은 불요하나,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출계획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기금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단 위	세 부	사 업 내 역	지 계 획 출 액 (A)	지 출 액		집 행 잔 액 (C=A-B)	
				(B)	구 성 비		
합 계			14,438	15,132	100.0	△694	
학교안전망 구 축	소 계		6,439	5,559	36.7	880	
	공 제 사 업 비	소 계	5,683	5,220	34.5	463	
		공 제 급 여 (사 고 보 상 비)	5,318	4,982	32.9	336	
		전 문 가 위 탁	37	15	0.1	22	
		보 상 심 사 위 원 회	21	6	0.0	15	
		소 송 업 무	174	161	1.1	13	
		비 용 의 보 전	132	55	0.4	77	
		예 방 사 업 비	478	190	1.3	288	
	학 교 안 전 사 고 피 해 자 상 담 지 원	27	16	0.1	11		
	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	245	132	0.9	113		
	교 직 원 온 라 인 상 담 청 구	3	0	0.0	3		
	인 적 자 원 용	인 건 비	소 계	1,269	910	6.0	359
			급 여	952	685	4.5	267
수 당			231	151	1.0	80	
4 대 보 험			85	73	0.5	12	
업 무 추 진 비		소 계	336	190	1.3	146	
		업 무 추 진 비	23	11	0.1	12	
		운 영 비	312	179	1.2	133	
예 비 비 및 기 타	차 기 이 월 금		6,393	8,471	56.0	△2,078	

○ **학교안전망구축**은 당초 지출계획현액(64억 3,900만원) 보다 △4억 6,300만원 감소된 55억 5,900만원이 지출된 바,

- '20학년도 보다 등교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제급여 지출은 당초 지출계획 현액보다는 △3억 3,600만원 감소하였고, 안전연수 등 예방사업비 지출이 △2억 8,700만원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됨

〈표 3-7〉 공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 0 2 1 (A)		2 0 2 0 (B)		증 감 (A - B)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071	4,982	5,946	4,264	1,125	717
요	양	7,046	2,578	5,904	2,255	1,142	323
장	해	25	2,403	40	1,800	△15	603
유	족	0	0	2	209	△2	△209

(3) 기금운영계획 변경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1회계연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이 필요한 바,

- 교육부가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 결산서 작성시 의회의 사전의결(추경포함)을 받아 변경이 확정되는 기금운용계획은 제외하고는,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할 수 있으나,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은 수입계획보다 실제수납이 6억 9,400만원 증액되어, 지출계획도 6억 9,400만원 증가되었음에도

-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부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기금의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하고 지출에 반영하여 증감된 변동사항이 즉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 수입계획의 예금이자수입이나, 지출계획의 예치금 등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교육감의 결재 없이 단순히 결산상 초과수입·초과지출로 처리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사료되어 기금운용부서와 기금총괄부서 모두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승인(2022. 6. 17.)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241
----------	------

제출연월일: 2022년 5월 24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소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8,062,296,534	409,489,850	7,070,592,586	6,661,102,736	8,471,786,384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